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1. 제안이유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자” 등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교육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66 팩스 : 02)3396-9055
- E-mail : moonsun1004@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 출 일 : 2025. 11. 5.

: 양은미의원 외 5명

제 출 자 (조미정의원, 윤판오의원, 송재천의원,
소재권의원, 손주하 의원)

1. 제안이유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자” 등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교육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8조(조례)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동법 시행령」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 2) 「노인복지법」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 2)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필요한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능정보화 활용 및 추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

한 필요한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예산 확보 및 자원 조달
4. 그 밖에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 활용을 위한 기초교육
2. 인터넷 금융 서비스 활용 및 보안을 위한 금융교육
3.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5.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능정보화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고령자의 개인별 수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방문 교육, 소규모 교육, 실습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요조사)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고령자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실태와 향후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